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 - 50호

2026년 상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지식재산처장

1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 개요

□ 추진 목적

○ **기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지원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 관련 근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지침(지식재산처 고시 제2025-4호)

□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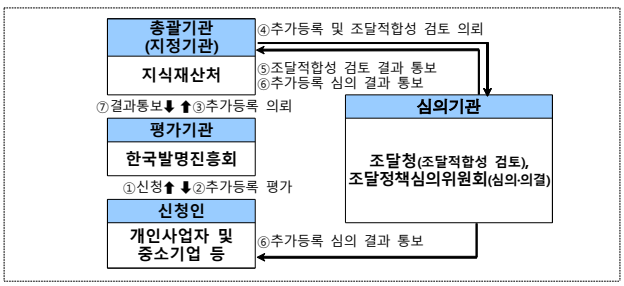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성능·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

○ 단, 추가등록 예정인 제품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제품의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등록 신청 가능

○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제품은 **기술개발단계가 7단계 이상**으로 수요기관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함

기술개발단계 (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및 직전 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리가 유효하고, 특허 존속기간은 최초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보다 더 길어야 함

○ **2024년부터**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중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구매 추천확인서에 명시된 규격에 한해 추가등록 신청 가능**하며, **확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식별번호는 추가등록 신청 불가**

* 혁신제품으로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제품(물품식별번호)이 추천확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규격추가 선행 후 신청해야 함

3 신청 제외 대상(필독)

○ 혁신제품 **신청 대상·자격·개발완성수준(TRL)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 **공고일 기준** 신청 자격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거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 지식재산권 인정 범위 》

- **신청기업**은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로, 기업이 **보유·등록한 기술 권리(국내 지식재산권)가 신청 제품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
- **신청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특허등록원부 기준, **출원 불가**)
-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 특허 권리에 대한 **'약정서(서식)'**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거나,** 제조 공정 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식별번호)으로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있거나, 현재 접수된 경우**

* 타 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기 지정된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제품에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중복 적용된 경우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 전 사전 확인

○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생산*)**이 아닌 단순 공급 혹은 OEM 제품

* **협업생산**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만 인정**되며, 해당 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필수 제출

○ 시제품 개발 전 단계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

4 제출 서류

○ 작성 서류

연번	서류 항목	서식	파일형태	비고
1	**혁신제품 신청서(추가등록)**	붙임1	PDF	필수
2	**혁신제품 설명서(추가등록)**	붙임2	한글	필수
3	**혁신제품 규격목록(추가등록)**	붙임3	PDF, Excel	필수
4	**추가등록 제품규격서** **일반제품, 소프트웨어 제품 양식 택1 작성*	붙임4-1 붙임4-2	한글	필수
5	**제품규격서 신구대조표**	붙임5	한글	필수
6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확인서(추가등록)**	붙임6	PDF	필수
7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붙임7	PDF	필수
8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붙임8	PDF	필수
9	**신청기업 서약서**	붙임9	PDF	필수
10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붙임10	한글	필수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및 실무자 모두 제출*	붙임11	PDF	필수
12	**약정서** **권리자가 공동 또는 다수 권리자인 경우*	붙임12	PDF	해당 시

○ 증빙 서류

연번	서류 항목	세부내용	비고
1	사업자등록증명서	* 90일 이내 발급분	필수
2	중소기업 확인서	* 공고일 기준 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 함	필수
3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혁신장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필수
4	특허등록원부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발급 일자가 필히 표기되어야 함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조회/발급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저장	필수
5	등록특허공보	*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특허번호 입력/조회 → 공보 버튼 클릭/저장 * 특허증, 공개특허공보 제출 불가	필수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기업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시험성적서,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의 유효기간이 **3년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3년 초과분 인정 불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필수
7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 1개 이상 제출(신청제품의 물품분류번호 명시) * 협업생산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만 인정(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 단순 공급 혹은 OEM 제품 불가	필수

○ 서류제출 요령

□ **세부 파일 저장 방법**

- 작성·증빙 서류의 세부 파일명은 평가위원이 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항목의 번호, 명칭과 동일하게 설정(예시 이미지 참고)
- 각 서류의 파일형태는 공고에서 요구하는 형태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제출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
(붙임1) 혁신제품 신청서(추가등록)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붙임2) 혁신제품 설명서(추가등록)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컴오피스 한글 ...
(붙임3) 혁신제품 규격목록(추가등록)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컴오피스 한글 ...
(붙임3) 혁신제품 규격목록(추가등록)_기업명	2024-09-24 오후 3:25	Microsoft Excel ...
(붙임4) 추가등록 제품규격서(일반제품)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컴오피스 한글 ...
(붙임5) 제품규격서 신구대조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컴오피스 한글 ...
(붙임6)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확인서(추가등록)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붙임7)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붙임8)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컴오피스 한글 ...
(붙임9) 신청기업 서약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붙임10)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컴오피스 한글 ...
(붙임1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1) 사업자등록증명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2) 중소기업 확인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3)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4) 특허등록원부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5) 등록특허공보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6-1) 시험성적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6-2) 인증서(인증서 명칭 기재)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7) 직접생산확인증명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5 평가 항목 및 절차

○ 주요 평가 항목

- 추가등록 신청 제품이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성능·특허 등은 유지**한 채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의 변경 여부 확인**
- 생산 시설 현황 및 실태, 시험 여부 등 **추가등록 적합 여부 판단**

○ 평가 절차

①나라장터 제품등록 및 신청·접수	⇨	②서면평가	⇨	③조달적합성 검토	⇨	④안건 심의·의결	⇨	⑤인증서 발급
신청기업		평가위원회		조달청 (혁신제품지원센터)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		지식재산처
~'26. 3. 20.		'26.3월 말		'26.4월 말 ~5월 말(5주)		~'26.6월 중순		~'26.6월 말

* 추가등록의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 기반으로 서면평가만 시행

6 신청 안내

○ 사업 공고: 2026. 2. 23.(월) ~ 2026. 3. 20.(금)

○ 접수 기간: 2026. 3. 11.(수) 10:00 ~ 2026. 3. 20.(금) 16:00

* 신청기업에서는 온라인 접수 시 **신청 페이지 內 정보 작성 등 접수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2026. 3. 20., 16시 기준으로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며, 기한 내 접수 불가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접수 증가 등으로 신청 페이지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 1~2일 전 접수 완료 권장

○ 접수 방법: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평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접수

《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등록방법 》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https://www.g2b.go.kr:8053/main/main.do)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의 3번째 메뉴인 "목록화요청" 클릭 → 품목(식별번호) 등록 → 동의함 → 품목등록 요청하기 → 검색어 입력 → 확인 → 추천품목 클릭 → 신청서 작성 → 요청
- 문의처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1588-0800, 시스템 문의:070-4056-6399)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http://www.kipa.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 사업신청(규격추가)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최경주 연구원(02-3459-2807, fast@kipa.org)**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7 선정 · 지정 취소 사유

○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위조·변조) 방법으로 추천 대상에 선정된 경우

* 제출 서류를 타인이 대신하여 작성·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지정 이후, 공공성·혁신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 선정·지정 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붙임4' 제품규격서 기준) 등 지식재산권 권리**(전용실시권 포함)가 **미확보되거나** 취소·무효·소멸·이전·변경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권리 또는 상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구매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상호의 변경 및 지정된 제품의 납품실적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선정·지정된 이후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가 된 경우**

○ **조달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직접생산 확인이 어렵거나, 협업 승인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자의 제조 물품으로 조달등록이 불가한 경우

○ 혁신제품 지정 이후 확정된 **규격서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

○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 및 재정경제부 장관이 혁신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신청 마감 이후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최종 지정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천·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혁신제품 지정업체는 지정 심사 시 **적용기술(특허)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추가등록 적합 시 혁신장터를 통해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음(단,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기간과 동일)

○ 혁신제품 온라인 인증서 발급 방법

-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 홈페이지(https://ppi.g2b.go.kr:8914/portal/intro.do)
  → 홈페이지 중단의 1번째 메뉴 "국민(공통)" 중 →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클릭
  → 지정정보 목록 → 인증번호, 지정업체명, 지정공고차수 등 검색입력
  → 해당 인증 번호 클릭 → 인증서(한글) 클릭 → 확인(발급)
-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 인증서 발급 문의(070-4304-1107/2394)

○ 신청 후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를 모두 통과하더라도 **결격사유**(신청 제외 대상, 법정의무인증 미비 등)**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혁신제품 지정 이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추후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됨

-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 받은 경우

* 동일 기술: 제품규격서 '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기재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붙임1] 혁신제품 신청서(추가등록)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청서(추가등록)

신청기업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주 생산품 :

기 지정 혁신제품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특허 권리번호: 최초 지정 당시 특허 등록 권리번호 기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대표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상기 표에는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대표 혁신제품(물품식별번호)만 기재**하며, 1건 이상인 경우 설명서 및 규격목록 자료에 전체 작성(추가등록 신청모델 수를 혁신제품명 옆에 반드시 명시)				
	기술 구분	[ ] ①기계,금속 ②전기,전자 ③정보통신 ④바이오,의료 ⑤화학,섬유 ⑥건설환경, ⑦기타( ) *기술 분야가 유사한 항목으로 **가장 적합한 1개를 선택**하여 [ ]에 번호 기재			
	주요 내용	* 제품 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붙임 서류	1.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 규격서 및 신구대조표 4. 추가등록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

[붙임2] 혁신제품 설명서(추가등록)

제 품 설 명 서

[요약서] 인증 혁신제품명 : OOO 제품 [주식회사 OOO]

추가등록 제품 개요(각 항목 별 2줄 이내 작성)	추가등록 제품 대표 사진
○ (공공문제인식) 예: 환경오염으로 ooo를 저감하기 위한 문제가 발생	
○ (제품기능) 예: ooo를 줄이고 ooo기능을 제공	
○ (핵심기술) 예: ooo기술을 적용 ooo기능을 최소화, ooo을 가능하게 구현	
○ (적용특허) 예: 10-1234567호(핵심특허) 外 00건	
○ (활용분야) 예: ooo공공기관의 ooo 영역에 연결하여 사용	
○ (기대효과) 예: ooo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비용 절감 등 공공문제 해결	
○ (예상가격) 예: 000만원/시스템 또는 대당	

[설명서]

혁신제품 개요	(혁신제품명) 신청기업이 선정된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기 지정 혁신제품의 지정 번호 기재 (특허 권리번호) 최초 지정 당시 특허 등록 권리번호 기재
추가등록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기존 신청서 내용과 다를 경우 비교 설명하고 반드시 밑줄 표시)	
제품 사용 용도와 활용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1페이지 이내)	
추가등록 제품의 공공 활용(도입) 영역 (※기존 신청서 내용과 다를 경우 비교 설명하고 반드시 밑줄 표시)	
제품이 활용(적용)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기술 (예 : ooo기관(지자체) / ooo관리(또는 서비스) 분야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추가등록 제품 사진 간의 비교 설명(중요)
기존 혁신지정 제품과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활용하여 비교 설명
추가등록 제품의 공공 문제 해결 효과 (※기존 신청서 내용과 다를 경우 비교 설명하고 반드시 밑줄 표시)
① 해당 제품 도입으로 공공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가? ② 구매기관의 업무혁신, 안전예방, 첨단화 등에 기여하는가? ③ (기존) 기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능 고도화 적합하며 다른 대안보다 우수한가? 위의 3가지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술(1페이지 이내)
추가등록 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기존 신청서 내용과 다를 경우 비교 설명하고 반드시 밑줄 표시)
① 안전·위생·보건·환경 보호 등을 위한 사회적 지출을 절감하는가? ② 외산제품 대체, 소재부품 및 연관 기술의 발전 등에 기여하는가? ③ 해외수출, 판로확대, 연관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위의 3가지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술(1페이지 이내)
추가등록 제품의 혁신구매 필요성 (※기존 신청서 내용과 다를 경우 비교 설명하고 반드시 밑줄 표시)
①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기술발전 트렌드에 부합, 시급히 도입·활용이 필요한가? ② 공공·민간시장 확대, 해외진출 등을 위한 상용화 가치가 있는가? ③ 감염병, 지진·화재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신속한 구매가 필요한가? 위의 3가지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술(1페이지 이내)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기술 및 품질·성능 (※기존 신청서 내용과 다를 경우 비교 설명하고 반드시 밑줄 표시)
사용자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품질・성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단, 차별적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시(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1페이지 이내)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추가등록 제품별 주요 소재·부품 정보 비교(중요)
모델별 주요 소재·부품 기재 및 원산지 정보 기입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추가등록 제품 정보가 비교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기재)

<예시>

구분	번호	모델명	주요 소재·부품	원산지
기 지정된 혁신제품 (대표 제품)	1	A		
	2	B		
추가등록 제품	1	C		
	2	D		

[붙임3] 혁신제품 규격목록(추가등록) (※추가등록 제품만 기재)

기본 정보				
기업 정보	기업명		혁신제품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 규격 정보						
구분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필수기입)**	치수(㎜) (필수기입)**	용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년 월 일

법인(기업)명 (인)

* **추가되는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하며, **엑셀파일에도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
** SW 등 규격명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명(모델명) 기입, 치수 등은 공란 처리 무방

[붙임4-1] 추가등록 제품규격서(일반제품)
※ 변경사항은 기존 규격서와의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글자색(파란색)으로 표기

(제 품 규 격 서)

제품명

회사명: 00000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구분	물품목록번호	모델명	세부 사양		
			예) 치수	예) 용도	예) 정격
1	–				
2	–				

2.2 품질기준

적용자재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적용기술	인증(등록)번호	기술명(발명,고안명칭)	발행기관	비고

※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권리가 취소·무효·소멸·이전·변경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선정·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

3. 구성, 재료
제품을 구성하는 구성품이 관계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KC) 또는 법정의무인·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 반드시 해당되는 승인(인증 또는 허가)된 제품을 사용한다.
[총괄표]

모델명	재료	자재구성표

[주요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규격치수 (mm)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명	모델(부품)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1								
2								
3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6.2 성능 및 시험방법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 일반제품 규격서 작성 요령

① 규격서는 **A4 용지에 한글(HWP) 파일 세로방향으로 작성**할 것
②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면명조**, **줄간격은 160%**로 할 것
③ 규격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 (아래 표 참고)

항목	하위 항목	작성 방법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 신청제품의 일반적·특수적 기능과 용도의 범위를 간단하게 작성
	1.2 특징	-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NEP, NET, 녹색기술인증)의 기술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특징을 객관적으로 서술 - 검증되지 않은 성능 데이터 및 추정 결과물은 포함하지 말 것
2. 규격	2.1 제원	- 물품목록번호(물품분류번호(8자리)+물품식별번호(8자리))와 모델명은 필수적으로 작성 - 제품의 세부사양은 자율적인 항목으로 선정하여 작성하되,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등록된 규격별 세부 속성값과 일치하도록 작성
	2.2 품질기준	- 자사에서 앞으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항목 및 적용기준 기재(관련 시험성적서 기반,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절차서 기준으로 작성)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 제안된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 기술자료의 명칭, 등록번호 등 작성 - "기술자료"란 특허, 실용신안, NET, NEP, 녹색기술인증을 말함
3. 구성, 재료	-	- [총괄표]에는 모델별 주요 자재 및 자재구성표를 작성 - [주요자재소요량]에는 모델별 주요 재료의 품명, 재질, 규격, 단위, 수량, 원산지를 필수적으로 작성 - 특정 재료에 혁신제품 신청 시 제안한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해당 자재는 반드시 기입할 것.
4. 형태	4.1 전체사진	- 규격별 전체사진의 작성
	4.2 제품구조	- 각 구성부에 대한 구조 이미지와 기본적인 설명을 상세히 작성 - 단, 제품 구조는 제안한 혁신기술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4.3 마감 및 외관	- 제품의 마감 및 외관의 취급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작성
5. 제조 및 가공	-	- 제조공정에 관한 현장사진 또는 제조공정표(QC 포함) 등을 활용하여 작성 - 제조 및 가공 상에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다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 직접생산확인기준(중기간경쟁제품일 경우 중기부, 일반제품의 경우 조달청)에 부합되도록 작성할 것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 혁신제품 신청 시 제안한 모든 적용기술(특허, 실용신안 등)의 등록번호와 명칭을 기재하고, 관련한 세부 기술내용을 상세히 작성
	6.2 성능 및 시험방법	- 혁신제품 신청 시 제안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항목·시험기준·시험방법의 작성 - 성능은 공인시험 또는 자체시험을 통해 검증이 가능한 항목으로 작성할 것 - 모델별 성능이 상이할 경우, 모델별 성능을 별도로 작성할 것
7. 하자보증	-	- 인명과 관련되는 물품(의료장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전동기 등)은 3년, 시스템 장비(수처리장비, 보일러, 소각로, 냉난방기, 송풍기, 선박, 역무자동화설비, 변전설비, 신호설비 등)은 2년, 그 외에는 1년으로 하되 업체의 희망에 따라 더 긴 기간으로 작성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 자체 규정하는 포장의 방법, 포장 재질, 치수 등을 작성
	8.2 표시	- 자체 규정하는 표시사항, 표시장소, 표시방법 등을 작성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표시사항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항목으로 작성할 것
9.적용자료	-	- 규격서 작성에 인용된 표준, 규정, 법률, 인증, 인허가 등의 최신화 자료의 번호와 명칭 등을 작성

[붙임4-2] 추가등록 제품규격서(소프트웨어제품)
※ 변경사항은 기존 규격서와의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글자색(파란색)으로 표기

(제 품 규 격 서)

제품명

회사명 : 00000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구분	물품목록번호	모델명	세부 사양		
			예) 용도	예) 구매단위	예) 라이센스 (사용기간)
1	-				
2	-				

※ 소프트웨어(S/W) 설치를 위한 권장사양 및 운영환경
(권장사양 및 운영환경은 구매자가 사전에 갖추어야 할 환경으로써, 납품 시 불포함)

구분	물품목록번호	모델명	권장사양(H/W)	운영환경
1				
2				

2.2 품질기준

적용자재	시험항목	적용기준	시험방법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적용기술	인증(등록)번호	기술명(발명,고안명칭)	발행기관	비고

※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권리가 취소·무효·소멸·이전·변경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선정·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

3. 구성, 재료

구분	종류	수량	비고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소프트웨어 구성 개념도)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6.2 성능 및 시험방법

7. 하자보증

무상하자보수 내용			설 명
항목	세부항목	지원범위	
기술지원			
제품지원			
교육지원			

구매 후 00년간 아래와 같이 무상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함.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 소프트웨어제품 규격서 작성 요령

(소프트웨어제품은 하드웨어를 일체 포함하지 않은 제품)

① 규격서는 A4 용지에 한글(HWP) 파일 세로방향으로 작성할 것
②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 줄간격은 160% 로 할 것
③ 규격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 (아래표 참고)

항목	하위 항목	작성 방법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 신청제품의 일반적·특수적 기능과 용도의 범위를 간단하게 작성
	1.2 특징	-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NEP, NET, 녹색기술인증)의 기술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특징을 객관적으로 서술 - 검증되지 않은 성능 데이터 및 추정 결과물은 포함하지 말 것
2. 규격	2.1 제원	- 물품목록번호(물품분류번호(8자리)+물품식별번호(8자리))와 모델명은 필수적으로 작성 - 제품의 세부사양은 자율적인 항목으로 선정하여 작성하되,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등록된 규격별 세부 속성값과 일치하도록 작성 - (※)에는 구매자가 사전 갖추어야할 소프트웨어(SW) 설치 시 HW의 권장사양 및 환경을 기술
	2.2 품질기준	- 자사에서 앞으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항목 및 적용기준 기재(관련 시험성적서 기반,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절차서 기준으로 작성)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 제안된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 기술자료의 명칭, 등록번호 등 작성 - "기술자료"란 특허, 실용신안, NET, NEP, 녹색기술인증을 말함
3. 구성, 재료	-	- 제품 납품 시 제공되는 구성품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재 - 운영체제(OS), 개발언어 등의 정보 기재
4. 형태	4.1 전체사진	- 규격별 소프트웨어의 사진 또는 구동이미지를 작성
	4.2 제품구조 (소프트웨어 구성 개념도)	- 각 구성부에 대한 구조 이미지와 기본적인 설명을 상세히 작성 - 단, 제품 구조는 제안한 혁신기술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4.3 마감 및 외관	- 작성 생략할 것 (공란)
5. 제조 및 가공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	-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 - 개발 공정상에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다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 혁신제품 신청 시 제안한 모든 적용기술(특허, 실용신안 등)의 등록번호와 명칭을 기재하고, 관련한 세부 기술내용을 상세히 작성
	6.2 성능 및 시험방법	- 혁신제품 신청 시 제안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항목·시험기준·시험방법의 작성 - 성능은 공인시험 또는 자체시험을 통해 검증이 가능한 항목으로 작성할 것 - 모델별 성능이 상이할 경우, 모델별 성능을 별도로 작성 할 것
7. 하자보증	-	- 무상하자보증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작성할 것 - 무상하자보증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역을 기재할 것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 자체 규정하는 포장의 방법, 포장재질, 치수 등을 작성
	8.2 표시	- 자체 규정하는 표시사항, 표시장소, 표시방법 등을 작성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표시사항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항목으로 작성할 것
9. 적용자료	-	- 규격서 작성에 인용된 표준, 규정, 법률, 인증, 인허가 등의 최신화 자료의 번호와 명칭 등을 작성

[붙임5] 제품규격서 신구대조표

혁신제품 제품규격서 신구대조표

항 목	최초규격서	변경규격서 (추가등록 내용 반영)
1. 제품의 개요		
2. 규격		
3. 구성, 재료		
4. 형태		
5. 제조 및 가공		
6. 기능 및 성능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9. 적용자료		

[붙임6]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확인서(추가등록)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확인서(추가등록)

신청기업	기업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	
	대표자명 :	신청자명 :
혁신제품명 (인증번호)	혁신제품명 : 인증번호 :	
추가등록 신청제품 (모델명)	※추가등록 제품 대표 1건만 작성(제품명 및 물품식별번호가 1건 이상인 경우 '[붙임3] 신청 제품 규격목록' 및 엑셀파일에 상세 작성)	

제품확인 자기점검표(신청기업 작성)				자기 체크 (필수 제출)
1	일반사항	인증, 특허 유효기간 (신청시점 유효)	[인증 별 기간 작성] 특허10-******* : ~2025.12.31까지	O / X
2	기술개발 단계 (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O / X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 검증이 완료		O / X
		[9단계] 양산 요건 완료(시장출시 및 직전단계)		O / X
3	생산방식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 1개 이상 제출		O / X
		협업생산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O / X
4	신청기술 적용여부	모델명 / 적용기술인증 / 적용여부 ABC / 특허 제 10-1111111호 / 적/부 ABC / NET 00-000호 / 적/부 *상세 내용은 다음 쪽 '기술적용 설명자료' 에 작성(필수)		O / X
5	핵심성능 유지여부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추가등록 제품에 동일 핵심기술, 성능, 특허 등 적용 여부 *상세 내용은 다음 쪽 '기술적용 설명자료' 에 작성(필수)		O / X
6	추가등록 제품의 변경사항 기재 여부	기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추가등록 제품의 외형, 기타 성능 등 변경에 대한 비교 설명 여부 *상세 내용은 다음 쪽 '기술적용 설명자료' 에 작성(필수)		O / X

본 기업은 자기점검표에 표시한 내용과 관련 첨부자료가 사실인 것을 서약하고, 위 사실이 거짓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신청기업명 : **대표자 :** **(인)**

□ 기술적용 설명자료(신청기업 작성, 추가등록)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추가등록 제품의 기술적용 설명자료
(※ 기존 신청서 내용과 다를 경우 비교 설명하고 반드시 밑줄표시, 필요시 모델별 작성)

◈ 신청제품의 특허기술 적용 여부 및 권리정보를 아래 양식에 맞추어 작성(중요)

적용 제품규격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혁신제품에 적용된 발명·실용신안 정보

No	등록번호	권리자	발명의 명칭	등록일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1				
...				
00				

제품규격서 정보와 동일해야 함

<청구항, 기 지정된 혁신제품, 추가등록 제품간 비교 설명>

※ 작성 방법
- 신청 제품의 구성요소를 항목별로 작성하고, 각 구성요소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를 기술적 대응 관계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
- 적용된 특허(실용신안)는 독립청구항 기준으로 작성. 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술된 청구항 의미(예: 청구항 1 등)

*도면, 제품 사진 및 적용된 특허 개수는 제한이 없으며, 작성 양식은 신청자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 (단, 신규지정 시 적용된 특허와 동일해야 함)

<사진: 신청제품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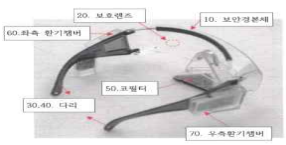

* 신청 제품의 구성요소 전부를 나열하고, 기존 제품 대비 혁신성이 있는 구성요소(핵심기술)의 경우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기재)를 함께 기재
* 제품 실물이 확인 가능한 사진 또는 도면을 활용해 구성요소에 적용된 특허 기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 사진이나 도면으로 특허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성적서, 인증서, 측정결과 등 객관적 기술 자료 별첨

구성요소		기술 구분	적용 특허(실용신안) 독립항		특허적용 대비결과 신청제품 적용 여부	
			No 1	...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대표 특허 적용 내용	추가등록 제품의 대표 특허 적용 내용 변경사항
1	보호렌즈	핵심	청구항 1	청구항 5	핵심기술이 특허 청구항과 연결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함. 구성요소별로 청구항의 용어와 1:1로 대응.	* 좌측 제품과 비교 설명(동일할 경우 '좌동'으로 표기)
2	보안경본체	핵심	청구항 1		No 1: 청구항 1의 보안경 본체(10), 보호 렌즈(20).. No 00: 청구항 3의 000에 해당	
3	우측환기챔버	핵심		청구항 1		
4	코필터	핵심		청구항 3		
5	다리	종래			종래기술의 경우 대응 특허 불요	
6	좌측환기챔버	종래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추가등록 제품의 기술적용 설명자료
(※ 기존 신청서 내용과 다를 경우 비교 설명하고 반드시 밑줄표시, 필요시 모델별 작성)

◈ **제품의 외형변경 사항에 대한 관련 설명 (중요)**
*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추가등록 제품에 대한 세부 비교 설명

기 지정된 혁신 제품 외형	추가등록 제품의 외형 변경사항
* 제품 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 * 사진 및 도면으로 활용하여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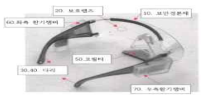	* 좌측 제품과 비교설명(동일할 경우 '좌동'으로 표시) * 사진 및 도면으로 활용하여 기술

◈ **제품의 성능 및 기능 추가 사항에 대한 관련 설명 (중요)**
*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추가등록 제품에 대한 세부 비교 설명

구분	기 지정된 혁신제품 기술·성능 등	추가등록 제품의 기술·성능 등 변경사항
핵심 기술 · 성능	* 제품 핵심 성능·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 *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하여 기술 (증빙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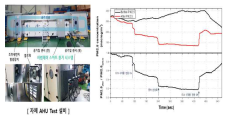	* 좌측 제품과 비교설명(동일할 경우 '좌동'으로 표시)
기타 성능 등		

◈ **공공조달시장 납품 관련 설명**
1. 제조 및 가공(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첨부)

2. 하자보증

3. 포장 및 표시
3-1 포장
3-2 표시

4. 적용자료(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

[붙임7]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혁신제품명			

■ **추가등록 신청제품만 작성**

구분	물품분류번호(8자리)	물품식별번호(8자리)	모델명
1			
2			

기술인증(특허 등)	구분	특허등록번호	특허명	최종등록권자
	1			
	2			

※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 기재 요망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는 별도 제출

법정의무이행자료	※ 해당되는 경우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서식) 참고하여 별도 제출
우수조달물품 지정여부	□ 유 □ 무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여부	□ 유 □ 무
MAS계약 여부	□ 유 □ 무
신청제품 제조여부	□ 제조 □ 공급 □ 협업체

□ 성능 기준(양식)

품질기준					비 고
시험항목	단위	목표기준	달성실적	검사기준	

□ 제품 설명

○ 제품의 용도 :
○ 제품의 주요 기능 :
○ 기타사항(본 제품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유롭게 기재)

※ 자기점검표에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신청제품의 이해 및 관련 규정 등 만족 여부에 활용되며 작성·제출함에 있어 허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귀속됨을 안내 드립니다.

0000년 00월 00일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8]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법정의무 인증자료 목록

회사개요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 소	(□□ -)		
신청제품명				
물품식별번호				
법정의무 인증자료 1)	연번	종류	유효기간	관련법령
	1	kc인증(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만료기간없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	○○인증	19.5.28 ~ 24.5.27	-
	3			
	4			
	5			

*** 법정의무인증(KC 등) 해당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리스트를 작성하고 진행 여부를 명기할 것**

1) 법정의무인증자료 :
① 종류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목록을 기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필수)
② 유효기간 : 해당 법정의무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재 예시) 19.5.28~24.5.27 또는 만료기간 없음
③ 관련법령 :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붙임9] 신청기업 서약서

신 청 기 업 서 약 서

본 신청기업은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가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재정경제부·조달청·지식재산처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신청기업은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와 관련된 기획재정경제부·조달청·지식재산처 심의 결과에 대해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규정과 재정경제부·조달청·지식재산처 해석에 따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인(기업)명 (인)

재정경제부장관·조달청장·지식재산처장 귀하

[붙임10]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주관 부처	지식재산처	
신청자 (신청자 작성)	기업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신청 제품 현황 (신청자 작성)	명 칭	▸ 제품명 :

구분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모델명
1	추가등록 신청제품만 작성				
2					
3					

	용 도	▸
	기 능	▸
	인 증	▸ 기술인증 : 특허, NEP 등 ▸ 품질인증 : 환경표지인증, KS인증, K마크 등 ▸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

검토의견	* 빈칸으로 제출(조달청 작성 부분)

[붙임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실무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동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된 정보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한 평가를 위해 사용합니다. ▪ 본인확인·식별: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평가 결과 통보일 후 5년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수립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공모 선정에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본인은 위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목적	①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한 평가 ②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제품 보유기업에 연계지원 사업 안내 등
제공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	① 지식재산처 ② 재정경제부, 조달청, 한국조달연구원(혁신제품지원센터) 등 혁신제품 지정 관련 기관
보유·이용 기간	동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 결과 통보일 후 5년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사업의 참여 제한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본인은 위의 제공항목을 지식재산처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붙임12] 약정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약정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에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 . .

약 정 인

주 소 : _____

업체명(성명) : _____ (인)

주 소 : _____

업체명(성명) : _____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참고사항) 적용기술의 권리자(특허, 실용신안)가 공동인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제